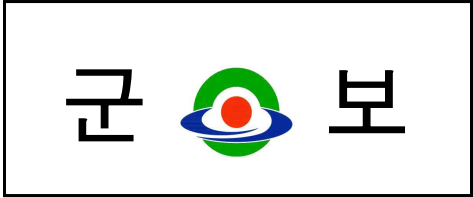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97호 2025. 3. 10.(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환매권 발생 통지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434호)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44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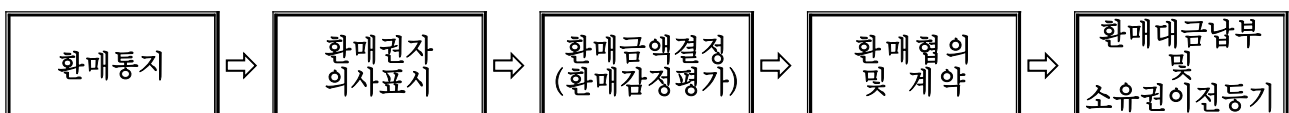
환매권 발생 통지 공고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6호, 소로3-61호, 소로3-71호)사업의 편입되어 취득한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통지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환매권자(중전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께서는 환매신청 기간 내에 환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예 천 군 수

1. 공 고 명 : 환매권 발생 통지 공고
2.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3. 공고기간 : 2025. 3. 10. ~ 2025. 3. 25. (15일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5. 공고내용 : 환매권 통지가 불가능한 환매권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가. 환매대상 토지 : 붙임 내역과 같음
 - 나. 환매권 발생 사유 :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어 환매권 발생
 - 다. 환매 절차



※ 환매권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

6. 기타사항

- 환매감정평가 :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환매감정평가 실시
- 환매금액 :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
- 환매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일괄하여 환매금액을 협의할 계획

7. 환매신청 장소 : 예천군청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650-6949)

□ 환매대상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 당시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1	예천	청북	387-3	답	271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331	정○록	
2	예천	청북	387-2	답	1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331	정○록	
3	예천	대심	624-5	전	86	대전 대덕구 법동 195-1 그린타운아파트 102-403	황○욱	
4	예천	대심	626-3	전	143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340-5	박○근	
5	예천	대심	500-13	전	77	대전시 서구 가장동 55, 삼성래미안아파트 107-703	김○수	331/662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1, 현대아파트 102-1204	김○경	331/662
6	예천	대심	500-11	전	21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78-7, 벽산아스타 103-2901	전○창	
7	예천	대심	500-12	전	10	대전시 서구 가장동 55, 삼성래미안아파트 107-703	김○수	331/662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1, 현대아파트 102-1204	김○경	331/662
8	예천	대심	498-5	전	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2, 1401호(유경팰리스)	최○주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예  수

1. 조례명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및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지원대상 연령 확대(안 제2조)

○ 65세 이상 예천군민 → 50세 이상 예천군민

나. 지원거부 근거 마련(안 제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bakej04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 팩스 : 054-650-64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전화: 054-650-64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중 “65세”를 “50세”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중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u>65세</u>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 ----- <u>50세</u> ----- ----- ----- ----- -----.
제3조(지원내용)예천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u>지원</u>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 ----- ----- ----- <u>전부 또는</u> <u>일부를 지원</u> ----- -----.
제8조(<u>환수</u>)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원비를 환수</u> 하여야 한다. 1. <u>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u> 2. <u>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u>	제8조(<u>지원거부 및 환수</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u>지원비용을 환수</u> 할 수 있다. 1. <u>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u> 2. <u>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u> 3. <u>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u>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